



Monthly Tax Newsletter

Issue 104 | February 2023

A blurred background photograph showing a person's hands working on a white computer keyboard. In the background, there is a stack of papers or books on a light-colored wooden desk. The overall atmosphere is professional and focused on tax-related work.

삼정KPMG 세무본부 TKC

Contents

	Page
법인세법	2
• [예규]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완전자회사간의 무증자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처리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
• [예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조합원지분에 관한 정보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3
• [예규] 공동사업자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개시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 [예규] 수소액화플랜트의 조세감면 대상 여부	
소득세법	4
• [심판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법인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위 법인이 투자 법인의 출자지분으로 납입하였다가 위 법인이 출자지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가 액에서 출자금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예규] NFT 거래 플랫폼업자가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 [예규] 공동사업 종료로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 배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6
• [판례]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동통신사업자의 멤버십 포인트만큼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 그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한 대금을 단말기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포인트 상당액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사업자 양자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심사]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인용)	
• [심사] 신용카드 청구할인금액 중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인용)	
관세법	9
• [심판례] 쟁점물품(MANGO PULP BASE·PEACH PULP BASE)을 기타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제2106.90-9099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로 보아 HSK 제2008.99-9000호·제2008.70-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법인세법

[예규]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완전자회사간의 무증자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처리방법
사전-2022-법규법인-1013, 2023. 1. 27.

법인의 완전자회사인 A법인(“합병법인”)이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완전자회사인 B법인(“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을 합병대가 없이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합산되도록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TKC 코멘트]

- 기재부는 결손누적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자회사(“피합병법인”)가 다른 자회사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모회사가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법인-344, 2022. 8. 2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예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조합원지분에 관한 정보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 2023. 1. 30.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은 국조법 제52조 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TKC 코멘트]

- 국조법 제52조 제2호는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괄호 생략) 및 가상자산거래(괄호 생략)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각목 생략)”로 규정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예규] 공동사업자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개시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사전-2022-법규소득-0648, 2023. 1. 11.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에 따라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이며, 폐업 전에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TKC 코멘트]

- 조특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3항 제2호는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팔호 생략)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항 제3호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예규] 수소액화플랜트의 조세감면 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8, 2023. 1. 18.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특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TKC 코멘트]

- 조특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특정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특정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 조특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은 위 특정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열거하고 있고(제4조), 이를 이어받아 조특칙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는 조특칙 제13조의 10(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열거하고 있는데(제1호), 해당 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별표 7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함.
- 조특법 시행규칙【별표 7】에너지절약시설 중 위 기재부 예규상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음.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2. 신·재생에너지보급시설	가.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나. 수소 생산·압축·저장시설	1) 수소생산시설(연료개질설비로 한정한다) 2) 수소압축 및 저장시설(수소충전소 내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심판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법인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위 법인이 투자법인의 출자지분으로 납입하였다가 위 법인이 출자지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출자금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1인1118, 2022. 12. 29.

[사안] 청구인들은 화장품 제조법인인 D사의 주주로서 D사 발행주식의 100%("쟁점주식")를 2015. 7. 16. E사("쟁점사모투자법인")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F사("쟁점매수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같은 날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함. 청구인들은 2015. 7. 24.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들이 설립한 유한회사인 G사의 신규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같은 날 G사는 해당 출자금 전액을 쟁점사모투자법인의 후순위 유한책임사원의 출자금("쟁점출자금")으로 납입하여 후순위출자지분("쟁점출자지분")을 취득함. 한편, 청구인들은 2015. 9월경 등에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함.

쟁점매수법인은 2017. 7. 7. 청구인들을 상대로 화장품 제조에 대한 권리가 매도대상법인에 있지 않아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상 확약보증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11. 6. G사의 쟁점출자지분에 대한 권리 등을 포기하기로 합의함. 청구인들은 2019. 10. 25. 처분청에게 주식양도대금이 감액되었다는 사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이 건의 경우 당초 계약상 양도금액을 사후에 정산한다는 특별약정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약정내용대로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주식을 명의개서한 이후 잔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거래에 대한 권리의무(양도금액)가 확정된 것으로, 이와 같이 거래의 권리의무가 확정된 후에 양도금액을 사후정산조건부로 합의하면서 그 양도금액의 변경과 연계하여 거래의 잔금을 변경(감액)하는 내용의 특별약정서를 합의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에 대한 변경계약이라기 보다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가 확정된 후의 채권채무에 대한 조정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당초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상 주식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위 매매계약상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양도자가 취득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주식의 평가 잘못과 관련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매매대금 등을 산정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조심 2019전227, 2019. 12. 19.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들은 변경합의서 등에 따라 G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한 쟁점출자지분을 포기하기로 하였다면 당초 양도가액에 서 감액될 금액 역시 위 변경합의 당시 쟁점출자지분의 가액이라 할 것이지 청구인들이 당초 G사에 납입한 쟁점출자금의 가액 또는 G사가 쟁점사모투자법인에 납입한 쟁점출자지분의 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상법상 달리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의 출자금에 대한 권리포기의 절차 등을 정함이 없는 상황에서 합의서·확인서 등이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의 G사를 통한 쟁점사모투자법인에 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포기·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의 일부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TKC 코멘트]

- 대법원은 법인세와 관련하여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당초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245 판결).

**[예규] NFT 거래 플랫폼업자가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 2023. 1. 20.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거래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TKC 코멘트]

-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됨(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27호, 2020. 12. 29. 신설되었으나, 2025. 1. 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예규] 공동사업 종료로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 배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6, 2023. 1. 26.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판례]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동통신사업자의 멤버십 포인트만큼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 그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한 대금을 단말기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포인트 상당액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사업자 양자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33149 판결

[사안] 원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인 A사의 이동통신용역 관련 업무를 대행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단말기”)를 구매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로, A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단말기를 포함한 물품의 공급가액을 A사가 원고에게 고지한 출고가격으로 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공급가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 약정하였음. 한편 A사는 ‘A사 멤버십’에 등록한 고객에게 ‘별 포인트’(“이 사건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A사의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던 고객이 단말기만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의 구입가격 중 일부를 이 사건 포인트로 대신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방침(“이 사건 영업방침”)을 실시하였음. 이에 따라 원고는 해당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가격 중 일부를 이 사건 포인트로 결제하도록 한 후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받았고, A사에 매월 말 단말기 판매 대금을 정산하면서 고객의 단말기 구입가격에서 공제해 준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하였음. 원고는 단말기 대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가가치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음.

[판단] 이 사건 포인트는 A사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A사 멤버십 약정에 의하여 적립되어 고객이 A사 또는 그 제휴가맹점 등이 제공하는 용역 등을 이용할 때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이며, A사는 이 사건 영업방침에 따라 고객에게 원고와 같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할 때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만큼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음. 고객은 대리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고, 원고도 A사에 그 상당액만큼 감액된 금액만을 단말기 매입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와 A사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영업방침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만큼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결국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은 원고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 및 A사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각각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그렇다면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원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동시에 차감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만큼 원고의 매출세액이 감소한다고 하여 납부세액이 그만큼 감소하는 것은 아님.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이 원고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할 뿐 A사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음.

**[심사]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인용)**

감심 2020-1370, 2023. 1. 19.

- [사안]** 청구인은 홈쇼핑사업, 온라인 쇼핑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협약(“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사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포인트”)를 사용하여 구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인은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에 상당하는 일정 금액(“신용카드 포인트 할인금액”)을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청구인은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4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 [판단]** 2017. 3. 31. 이전에 거래된 이 사건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 등을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하는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판결), ② 기획재정부에서 2017. 4. 1. 이전에 마일리지 등 사용금액만큼 재화 등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한 점(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 1. 2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2017. 4. 1. 이후에 거래된 이 사건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2017년 개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에는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가목)과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나목)을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2017년 개정 시행령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2017. 4. 1.부터 시행되고, 그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③ 기획재정부에서 2017. 4. 1. 이전에 마일리지 등 사용금액만큼 재화 등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등의 공급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4월 1일 이후의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한 점(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 2022. 1. 27.)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분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려움.

[TKC 코멘트]

- 위 감사원 재결은 기존 입장과 동일하며(감심 2021-825, 2022. 5. 19.), 조세심판원도 같은 결론임(조심 2021부0962, 2021. 11. 19. 등).

[심사] 신용카드 청구할인금액 중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인용)

감심 2021-1065, 2023. 1. 19.

[사안] 청구법인은 상품 등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고객이 상품 구매 시 청구법인과 제휴를 맺은 신용카드사의 특정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구매시점에서 정상가격으로 결제되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시점에는 사전에 공지된 금액이 차감되는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사와의 청구할인에 대한 사전약정(“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청구할인금액 중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이 사건 할인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이후 청구법인은 이 사건 할인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신고·납부한 이 사건 할인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이 사건 거부처분”).

[판단] ① 청구법인은 고객으로 하여금 특정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고객에게 특정카드로 결제할 경우 공급대가의 일부를 할인해준다는 내용의 사전공지를 하고, 고객도 청구법인의 사전공지를 인식하고 특정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대가를 상품의 가격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제외하고 받았으므로 이 사건 할인금액은 공급대가의 결제방식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점, ②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이 사건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는 사전에 정산기간, 정산방식 등에 대한 할인제공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할인제공약정의 이행 여부 등은 고객에 대한 할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할인제공약정은 청구인과 고객 간의 상품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계약으로 이 사건 할인금액은 고객을 대신해서 지급한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기 어렵고, 신용카드사의 이 사건 할인금액 보전은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산절차에 불과한 점, ③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 모두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를 통해 할인혜택을 원하는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고객유치에 소요되는 주된 비용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금액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할인금액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약정에 의해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TKC 코멘트]

- 위 감사원 재결은 기존 입장과 동일함(감심 2021-848, 2022. 8. 18. 등).
- 기재부 및 하급심 판례은 마일리지 등(부가령 제61조 제1항) 외의 할인방식(가령 청구할인)에 대하여는 2017. 4. 1.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제3자 보전분 역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기획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 1. 25;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0누59750 판결, 현재 대법원 계류 중임).
- 한편, 조세심판원은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바 있음(조심 2019서0262, 2019. 6. 20. 등).

관세법

[심판례] 쟁점물품(MANGO PULP BASE·PEACH PULP BASE)을 기타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제2106.90-9099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로 보아 HSK 제2008.99-9000호·제2008.70-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22관0128, 2023. 1. 10.

[사안] 쟁점물품①(MANGO PULP BASE, 망고과육 약 21.25%, 액상과당 약 56.5%, 설탕 약 12.5%, 정제수 7.5%, 합성망고향 0.3%, 기타 약 2% 혼합조제한 황색계 점조액상 소매포장한 것)과 쟁점물품②(PEACH PULP BASE, 복숭아과육 약 21.25%, 액상과당 약 63.2%, 설탕 약 12.5%, 합성복숭아향 약 1.6%, 기타 약 1.5%로 혼합조제한 황색계 점조액상을 소매포장한 것)를 청구법인은 기타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제2106.90-9099호(8%)로 수입신고 하였음 처분청은 2020. 5. 15. 및 2020. 6. 11.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HSK 제2008.99-9000호와 HSK 제2008.70-9000호(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기본세율 45%)로 통지하였음. 청구법인은 2020. 10. 6. 품목분류사 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20. 11. 13.에 분석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통지하였고, 이에 2020. 12. 8.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21. 7. 23. 마찬가지로 동일한 품목분류결과를 통지함. 이에, 2022. 5.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세율차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7. 11. 심판청구를 제기함.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 유지 여부 판단기준으로 과실 함유량은 20%로 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쟁점물품은 토핑용으로 사용되므로 그 용도를 기준으로 제2106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는 2019년 제4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례 등을 비춰 과실의 함유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과실을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고 이후 이를 기준으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서 과실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제2008호로 분류하고 있는 점, 또한 제2008호에서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고,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 상관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들은 모두 과실 21% 이상에 제2008호에서 허용하는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첨가물질도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여 쟁점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하는 때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사용자의 주관적 용도나 수입 후 실제사용용도를 고려하지 않는 점에 따라 제2008.99-9000호와 제2008.70-9000호에 분류하도록 결정함.

[TKC 코멘트]

- 쟁점물품①과 쟁점물품②의 품목분류 쟁점은 모두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 유지 여부"에 해당함. 정책 운영에 있어 기준은 필요하나 다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과실 함유량의 기준을 20%로 정하고 그 이상 함유되었을 때 본질을 과실로 보는 점에 있어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20% 과실 함유물품과 19.99% 과실 함유물품이 약 0.1% 차이에 따라 37%의 관세율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른 관련 수입자들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음. 쟁점물품과 같이 과실 외 설탕이나 과당 향료, 정제수 등은 품목분류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재료들이 포함된 물품의 수입자에게는 그 기준에 대한 납득이나 이해가 더욱 절실할 것으로 사료되고, 수입자들은 사전에 이러한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함.

삼정KPMG 세무본부

Tax Knowledge Center

Key Contacts

이재호

부대표(센터장)

T 02-2112-0520

E jlee315@kr.kpmg.com

이윤영

Director

T 02-2112-7037

E yoonyounglee@kr.kpmg.com

정선아

S.Manager

T 02-2112-3024

E sunahjung@kr.kpmg.com

권성욱

S.Manager

T 02-2112-3543

E sungwookkwon@kr.kpmg.com

오혜주

S.Manager

T 02-2112-0954

E hoh7@kr.kpmg.com

태선영

Manager

T 02-2112-6624

E seonyeongtae@kr.kpmg.com

설민호

S.Senior

T 02-2112-3977

E minhoseol@kr.kpmg.com

주정연

Senior

T 02-2112-7038

E jungyeonjoo@kr.kpmg.com

김솔

Staff

T 02-2112-7906

E solkim@kr.kpmg.com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